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설치·운영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추가〉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대행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추가 ..	2
※ 참고자료	6
1. 공공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비교	6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6일 허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대행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추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자에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

1)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현행	개정안
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5. -----제4호까지의-----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²⁾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으로 하여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2)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법 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설치자(법 제48조)	운영자(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6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국가 및 지자체 설치업무 대행 :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민투사업시행자 → 준공 후 지자체에 귀속(기부채납)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국가 및 지자체 운영업무 대행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민투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이를 통한 수질 보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폐수처리시설은 통상 오염 부하·처리난이도 등에서 하수처리시설보다 높은 처리능력과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시행자 전체를 대행업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제5호 및 제6호), 부동산업자(제9의2호, 제10호) 등은 사익 추구에 따른 공익적 역할의 한계, 매각이나 수익성 악화 시 주체 변경 등으로 설치 사업 지속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⁴⁾.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⁵⁾으로,

공업지역(산업시설용지)이 포함되지 않거나 소규모로 포함될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⁶⁾, 제한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유사입법례로 현행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중 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오(폐)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 있다고 함.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비교는 <참고자료,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비교> 참고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비교

구분	공공폐수	공공하수																								
개념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일반적으로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방류하는 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라 하수(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방류하는 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국가 및 지자체 설치업무 대행 :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민투사업시행자 → 준공 후 지자체에 귀속(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도관리청) - 다만,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국가 및 지자체 운영업무 대행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민투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도관리청) - 공공하수도관리청 운영·관리업무 대행(일정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시설 현황 (‘24년말)	■ 시설개소 : 246개소 (이중 6개 지역 7개 시설이 국가 소유) ■ 시설용량 : 2,036,930㎥/일 (공공하수도 7.5% 수준 용량)	■ 시설개소 : 4,469개소 (500㎥/일 이상 723개소, 500㎥/일 미만 3,746개소) ■ 시설용량 : 27,196,754㎥/일																								
국고 보조	■ 산업단지 50(수도권)~70%, 농공단지 50~100% ※ 총사업비 중 산업시설용지(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물량에 해당되는 금액에 국고 보조	■ 광역시 30%, 일반 시·군 60% ※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 도시개발사업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될 경우 국고보조 없음																								
방류수 수질 기준	■ 수질항목 : BOD 등 7개 항목으로 동일																									
	<table><tr><th>구분</th><th>BOD(mg/L)</th><th>TOC(mg/L)</th><th>SS(mg/L)</th><th>T-N(mg/L)</th><th>T-P(mg/L)</th><th>총대장균군수(개/㎖)</th><th>생태독성(TU)</th></tr><tr><td>공공폐수</td><td>10</td><td>15~25</td><td>10</td><td>20</td><td>0.2~2</td><td>3,000</td><td>1</td></tr><tr><td>공공하수</td><td>5~10</td><td>15~25</td><td>10</td><td>20</td><td>0.2~2</td><td>1,000~3,000</td><td>1</td></tr></table>		구분	BOD(mg/L)	TOC(mg/L)	SS(mg/L)	T-N(mg/L)	T-P(mg/L)	총대장균군수(개/㎖)	생태독성(TU)	공공폐수	10	15~25	10	20	0.2~2	3,000	1	공공하수	5~10	15~25	10	20	0.2~2	1,000~3,000	1
	구분	BOD(mg/L)	TOC(mg/L)	SS(mg/L)	T-N(mg/L)	T-P(mg/L)	총대장균군수(개/㎖)	생태독성(TU)																		
공공폐수	10	15~25	10	20	0.2~2	3,000	1																			
공공하수	5~10	15~25	10	20	0.2~2	1,000~3,000	1																			
※ 【T-P, ‘29.12.1부터 시행】 공공하수 Ⅰ~Ⅲ지역 0.2, Ⅳ지역 2.0																										
처리 공정	■ 처리 공정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공공폐수시설에서 인근지역 하수 유입 또는 공공하수시설에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유입 → 스크린 및 침사지 → 1차 침전지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 → 방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